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운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수 신 각 신문사 법조담당 기자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신채호 : 796-8364)  
제 목 '법조인 자료실 설치' 등 「사법감시」 4호 주요내용  
날 짜 1996. 4. 17. (총 6 쪽)

## 보 도 자 료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조인 자료실 설치

1996년 4월 17일 (수) 격월간「사법감시」 4호 발행 주요내용

1. 바른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朴恩正, 이화여대 법학)에서는 사법의 공개화와 민주화를 위한 법조인 자료실을 설치하였습니다.
3. 법조인 자료실은 전현직 판검사 2,600여명의 개인파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파일은 기본적으로 판검사의 경력 등의 신상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장판사와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한 92년 이후 3,000여건의 판결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며, 수록자료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4. '법조인자료실 설치'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격월간「사법감시」(사법감시센터 발행)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별첨1> 「사법감시」 4호 법조인 자료실 기사  
<별첨2> 「사법감시」 4호 목차 및 주요내용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조인자료실 설치

## 사법의 공개화와 민주화를 위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법조계의 공개화와 개방화를 향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조인자료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판검사의 역할이 국회의원에 못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사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견제는 원천봉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법작용이 미치는 곳곳에 시민의 참여는 당연히 더욱 깊어지고 넓어져야 한다는 당위에 비추어 보면 법조인에 대한 자료축적은 늦은감이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제시된 바 있지만 시민의 참여가 가능해지려면 우선 법조계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고 공개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600명의 판검사 기초자료 갖춰

우선 자료실에 갖추어진 기초자료는 2,600명의 검사와 판사 및 판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개업한지 2년 미만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내용은 기초적인 경력과 개인기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법조인자료실의 자료범위를 판검사 중심에서 변호사로 확대해감과 동시에 해당법조인의 소송 및 재판기록, 관련 신문기사, 판결문으로 확대해갈 것입니다. 또한 법조인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위해 자료의 신빙성을 엄격히 검토하는 조건에서 법조인에 대한 평판과 시민들의 진정서류, 법조인에 대한 모니터, 사회활동 관련기록도 포함할 것입니다. 각종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의 전력과 활동이 국민 앞에 상세히 밝혀지고 언론에 의해 집중적으로 검토되는 것처럼 법조인에 대한 자료가 정

## 법조인 제보

제보자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호출	
주 소				전화	
				팩스	
제보할 법조인	성 명		소속지위		
제보사항을 알게된 경위: (제보내용은 뒤면을 이용하세요)					
증인·증거 또는 참고자료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있다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추가조사를 할때 협조할 용의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확하고도 상세히 공개되어야 법조인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사법민주사회도 더 빨리 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 법조인자료, 어떻게 이용되나?

법조인자료실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료의 수집부터 이용까지 법조인자료의 축



적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법감시센터의 법조인 자료는 법조인에 대한 주요 인사, 예컨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의 임명서 또는 법조인 출신 인사들의 공직취임, 예컨대 총리나 장관 임명 등의 경우에 이를 공개하여, 그 인물이 해당 공직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여론형성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나아가 임명권자에게 보내기도 하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인사의 경우에는 국회에 보내기도 할 예정입니다.

경우에 따라 개인적 비리나 불법이 신고되어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해서는 안될 판사나 검사가 있을 경우에는 판사의 경우 국회에 탄핵소추의결청원, 검사의 경우

### 제보할 사항

- 인권신장과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한 사항
- 인권침해와 비민주적 수사, 재판을 행한 사항
-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법조인 개인의 선행과 비리
- 법조인의 비윤리적 행위
- 은닉된 법조인의 재산관계나 불법적 영리행위
- 법정내 또는 법정외에서 행한 법조인의 비민주적 언행
- 그늘지고 소외받은 곳에 행한 봉사 내용

### 제보내용

※보내실 곳: (140-012)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전화: 796-8364 팩스: 793-4745 PC통신: 하이텔/천리안/나우컴ID : PSPD

징계청원운동을 벌이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인자료실의 자료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쓰여지는 것은 철저히 경계할 것이며 개인적 목적이나 영리목적을 위해서는 공개 할 수 없습니다.

## 법조인자료를 공공정보로 만들어야

다음의 그림들은 미국의 법조인에 대한 공공자료의 한 예를 보여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코넬대학 소장 자료로 인터넷에 공개된 것으로서 전 세계 인터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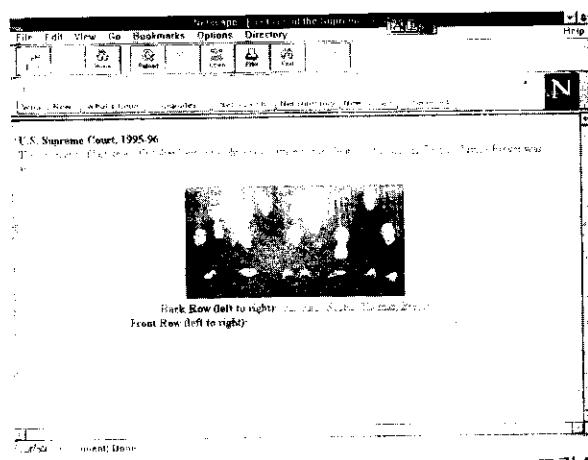


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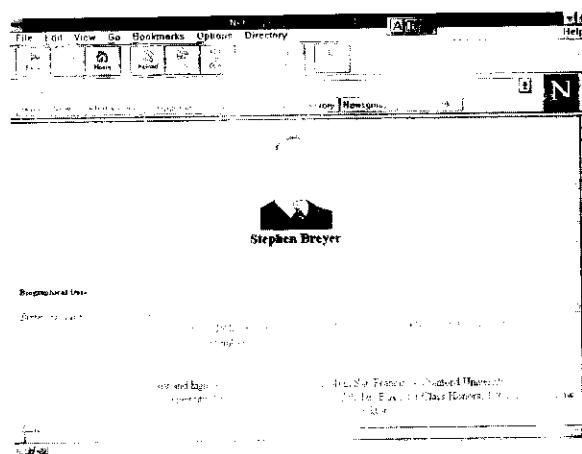


그림2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림1은 대법관에 대한 소개이고, 그림2는 그중 한 명인 Stephen Breyer라는 대법관의 출생과 교육과정, 경력, 사회활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고, 그림3은



그림4



그림3

그가 법정에서 그리고 법조활동을 통해 내놓은 각종 문서의 인덱스이며, 마지막으로 그림4는 각 문서의 전문입니다.

위 자료들은 사법과 관련된 정보도 전산화, 체계화, 통제화 되어야만 하고 이것이 국민들의 적정한 요구에 따라 공개되고 연구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대법원에서 법원자료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더 나아가 국민에게 자료를 공개하는 방법도 함께 모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 법조인 자료, 다 함께 수집합시다.

법조인 자료에 수록될 내용은 사법감시센터에서 신문, 방송, 잡지, 공보 등 각종 매체를 수시 검토하여 수집해 나갈뿐 아니라, 각종 인권관련 단체와의 협력하에 지속적으로 충실하고 새로운 자료를 축적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법조인자료실이 내걸고 있는 취지에 맞고 우리 사법에 의미있는 자료가 되기에는 몇 사람의 작업만이나 사법감시센터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특정 법조인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내 주시면, 법조인자료에 수록되게 됩니다. 다만 수록시 사실확인여부와 익명제보인지 현명제보인지 등을 구분하여 등재할 것임을 물론입니다. 제보는 서신,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지 환영합니다.

## <별첨2>

### 「사법감시」 4호 목차

#### 사법감시 25시

사법정의를 위해 나선 시민들  
사법피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조인자료실 설치  
참여연대 대안  
우리에게도 투표할 권리를!

#### 모니터리포트

지연되는 법정과 지각변호사  
재소자 외부진료비용 국가부담, 왜 전두환씨에게만 적용하나  
위자료지급 판결받고도 인지대 없어 소송진행 못해  
검사임용, 편협함을 벗어나지 못했다

#### 사법감시통신문

12.12.5.18 재판의 공개를 다시 촉구한다  
이것만은 고치자

증인소환장, 친근하게 바꾸자

#### 공익소송

공익소송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관리제도 전면적 개혁 불가피  
지옥전철, 더이상 참을 수 없다

#### 사법통계청

억울한 옥살이, 얼마나 되나?

#### 시민발언대

사법권에 대해 무감각해져버린 법조인들

#### 나의 사법피해 사례

내 가정의 행복을 되찾아 주신 잊지 못할 판사님

#### 단평

21억짜리 떡  
현재 위헌판결에 관련법 개정조치 없어  
성폭행 항거, 흥기로 상해치사 "무죄"  
특수학교 설립반대 집단이기주의에 사법부의 경종

## 격월간 「사법감시」 4호 주요내용

### 【사법감시 25집】 사법피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나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의 첫 월례포럼에서 사법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자신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이 소요되었는지 검토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형사보상법의 문제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개진한다.

### 【이경민은 그치지】 증인소환장, 친근하게 고치자

증인소환장은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법원과 만나는 첫 매개체로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인상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증언에 임하는 증인의 마음가짐을 결정하게 하는, 결코 사소하지 않은 문서이다. 기존 증인소환장은 딱딱하고 긴장을 유발하는 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좀더 친근하게 고치자는 주장이다. 이러한 의미로 소환장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았다. 증인소환장 양식은 대법원 예규로 정해져 있으므로, 대법원에서 쉽게 개정할 수 있는 문서이다.

### 【사법감시 농진분】 12·12, 5·18 재판의 공개를 다시 촉구한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재판의 공개와 관련하여 방청권 배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적, 이에 대해 방청권을 추첨식으로 배부하고 TV 중계 등의 공개방법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안하였다.

### 【친여인내 대안】 우리에게도 투표할 권리다

3월 11일 만20세 이상부터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5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이 헌법소원의 배경과 의미가 수록되어 있다.

### 【온나니 미루미】 위자료지급 판결 받고도 인지대 없어 소송진행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 드는 인지대는 소가에 1,0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더욱이 항소를 하려면 제1심의 배액 상당의 인지대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려면 제1심의 3배 상당의 인지대를 납부하여야 한다. 2심에서 7,700만원의 위자료지급판정을 받았으나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상고를 할 수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난향씨의 이야기가 실려있다.